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

제출년월일 : 1998. 9. 17.

제출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재해대책기금의 관리를 지침단체의 지정금고에 관리토록 개정 함(안 제3조).
- 나. 기금의 용도를 세분(보수정비사업, 응급복구비용, 연구용역비 등)하여 구체화 함(안 제4조).
- 다. 기금의 회계관리를 세계현금의 예로 관리토록 함(안 제5조).
- 라. 기금운용관리에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기금관리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 하는 조항 신설(안 제7조 내지 제9조).
- 마. 자치단체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3. 관계법령

-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 나.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기금의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매년 조상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 사용이 시장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 등의 정비 사업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6.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사하구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사업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로 처리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시국장
2. 기금출납원 : 건설행정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중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건설과 건설행정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